

#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26. 1. .

발 의 자 : 박선미 의원

##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마.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이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 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서 검토 의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범운전자회 지원’은 기 제정된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li><li>- 본 조례의 신설보다는 기존 2개의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함.</li></ul> |
|---|

- 기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3개의 교통봉사단체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음.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하남시에서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를 교통봉사단체로 지원하고 있으나 각각 비영리단체의 특성 맞게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타당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